

의안번호	제 31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의영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4년 9월 5일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
----------	----

발의연월일 : 2014년 9월 5일

발 의 자 : 이의영·이양섭·김학철·김인수·

박우양·황규철·김봉희 의원(7명)

1. 제안 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사랑하고 지원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인증 기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안 제1조, 안 제4조 ~ 안 제6조)

나. 예우 및 지원대상에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인증 기업 조문 신설(안 제4조, 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 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도지사가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을 예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 을 수상한 우수기업인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충청북도지사가 ‘품질경영대상’ 및 ‘품질경영우수기업’ 으로

지정한 우수기업인

4. 무역의 날이나 상공의 날에 정부로부터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
5.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 을 수상한 우수기업인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충청북도지사가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 기업’ 으로 지정한 우수기업인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도지사는 기업인이 존경받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10월 네번째 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2년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4조제1항제3호의 ‘품질경영대상’은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1개 업체로 하고, ‘품질경영우수기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5개 업체 이내

제8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조제1항제6호”를 “제4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조제1항제6호의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기업’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한 기업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20개업체 이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사랑하고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제2조(정의) ----- -----뜻은-----.</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3조 (생략)</p>	<p>제3조 (현행과 같음)</p>
<p>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①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p>	<p>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① 도지사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을 예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 을 수상한 우수기업인</p>

현 행	개 정 안
<p>2. (생 략)</p> <p>3. <u>‘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우수기업인</u></p> <p>4. <u>정부에서 무역의 날이나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u></p> <p>5. <u>충북지방중소기업청 선정 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u></p>	<p>2. (현행과 같음)</p> <p>3. <u>충청북도지사가 ‘품질경영대상’ 및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지정한 우수기업인</u></p> <p>4. <u>무역의 날이나 상공의 날에 정부로부터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u></p> <p>5. <u>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u></p>
<p>(신 설)</p>	<p>6. <u>충청북도지사가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 기업’으로 지정한 우수기업인</u></p>
<p>7. <u>기타</u> 신기술개발, 고용증대, 품질경영 향상, 노사협력 및 대규모 투자 등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p>	<p>7. <u>그 밖에</u> ----- ----- ----- ----- -----</p>

현 행	개 정 안
<p>② 기업인이 존경받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10월 네번째 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생략)</p> <p>② 제1항 제2호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p> <p>제8조(선정 및 지정 등) ① (생략)</p> <p>1. (생략)</p> <p>2. 제4조제1항제3호의 ‘품질경영우수기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5개 업체 이내</p>	<p>② 도지사는 기업인이 존경받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10월 네번째 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예우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2년으로 한다.</p> <p>제8조(선정 및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제4조제1항제3호의 ‘품질경영대상’은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1개업체로 하고, ‘품질경영우수기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5개 업체 이내</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4. <u>제4조제1항제6호</u>의 우수기업인에 해당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업인 5명 이내</p>	<p>3. <u>제4조제1항제6호</u>의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기업’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한 기업 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20개업체 이내</p> <p>4. <u>제4조제1항제7호</u> ----- ----- -----</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